

주거급여(임차급여)

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

- ◇ 근로능력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%이하인 모든 가구

지원 내용

- ◇ 지역별, 가구원수별,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- ◇ **지급일** 매월 20일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
조사 내용

- ◇ 수급권자의 소득·재산
- ◇ 수급권자의 주택조사(보장기관 의뢰 → 조사 전담기관(LH)이 신청조사, 확인조사)
- ◇ 거주유형, 임차료, 임대차기간, 실제 거주 여부, 주택소유 등 권리관계,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

신청인

- ◇ 수급(권)자·친족·기타관계인, 담당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
신청 장소

- ◇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접수
*신청 및 진행과정

신청(행정복지센터) >>>

소득재산 및 중복수해조사 >>>

결과 / 발표 >>>

이의신청 >>>

급여지급 및 관리

- ◇ 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1600-0777)